#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7 발의연월일: 2021. 1. 5.

발 의 자 : 양이원영·장철민·안호영

우원식 • 윤미향 • 박홍근

이수진(비) • 변재일 • 도종환

김경협 • 유정주 • 임종성

의원(12인)

### 제안이유

최근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통감염병이 출현하여 심각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애완용 등의 수요 확대로 야생동물과 사람간의 접촉도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야생동물과 사람 간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이나 국내에 유통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서는 다소 취약한 면이 있고, 야생동물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나 생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국민의 보건상 위해 및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

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나.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는 수입·반 입 가능종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 다.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양수·보관·폐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안 제2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판매업자에게 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4 신설).
- 라.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안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8까지 신설).
- 마.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수입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 의 정지가 야생동물 질병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9

및 제22조의10 신설).

#### 법률 제 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의 미한다.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제 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 마.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의3(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양도·양수·보관·폐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야생동물의 운송) 누구든지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야생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3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5년마다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질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수입·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한 후 수입·반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할 수 없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반입할 수 있다.
  - 1.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
    - 가.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나.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 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 수출·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입·반입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지정 방법·절차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입 · 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22조의4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보관 등) ① 제22조의2에 따라 수입·반입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살아있는 야생동물 및 그 알 상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보관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보관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증식된 경우 그 야생동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허 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또는 지정관리 야 생동물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2.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3.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

- 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
- 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영업의 내용·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휴업·폐업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
  -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 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3.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① 야생동물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 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2조의6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2조의6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

- 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 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
- 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 · 보관
-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 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 3. 최근 2년 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4.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 양수한 경우
- 3.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수입·반입·수출·반출·양도·양수·인공증식·보관·폐사·방사한 경우
-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8.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 9.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야생동물 영업 수행이 불가 능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1.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허가 기준
-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생산·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시기·방법·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제57조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수입·반입한 자
  -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의4. 제22조의8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한 자

제58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63조 중 "제23조의2제1항"을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3조의2제1항,"을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한 자

제70조제8호의2를 제8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수입·반입이 불가능한 지정관리 야생 동물을 수입·반입한 자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반입이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보관한 자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수입·생산·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 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 또는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가 소유한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 2. 제22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판매한 자제73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제22조의2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22조의4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의4.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 지 아니한 자
  - 7의6.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은 조류에 대해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파충류·양서류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제22조의2제1항 ·제3항 또는 제22조의4에 따라 수입·반입·수출·반출·양도·양수·보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지정관리 야생동물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제4조(지정관리 야생동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반입을 제한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인공증식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수출·반출 또는 제22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동물 위탁관리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ㆍ반입

을 제한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이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는 제2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사 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야생동물 인공증식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동물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제	
	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의미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u>6호의2·제8호 및 제8호의</u>	
	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	
	계위해우려 생물	
	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마. 「동물보호법」 제2조제1	
	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	
	<u>물</u>	

5. ~ 9.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5. ~ 9.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환경 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3(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양도·양수·보관·폐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야생동물의 운송) 누구든 지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 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 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 이 야생동물이 운송 중에 상 해를 입지 아니하고, 야생동물 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 도 유지 등 운송 중 고통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u>5년마다</u>
<u> 수립·시행</u>

② ~ ④ (현행과 같음)

지 등) ①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4. (생 략)
-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 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 ② ~ ⑥ (생 략)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 ·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1 / (됬케쾨 기 O)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① ----- 

 -----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1. (생략)
-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나. (생 략)

<신 설>

다. (생 략)

② (생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질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 려가 없을 것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 출・수입 등) ① 누구든지 지정 관리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포유 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제21 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는 수입 ·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 동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한 후 수입 · 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 1항에 따라 수입 · 반입할 수 없 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를 수입 · 반입할 수 있

다.

- 1.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 오
  - 가.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나.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 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 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 ③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 류를 수출·반출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 설>

<u><신</u>설>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입·반입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지정 방법·절차 및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2제 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 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입・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경우

제22조의4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보관 등) ① 제22 조의2에 따라 수입·반입된 지

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 항에 따라 수입・반입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살아있는 야생동 물 및 그 알 상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보관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보관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증식된경우 그 야생동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또는 지정관
리 야생동물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해당하는 야
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 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2.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3.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

   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
- 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

   양식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절차 및 영업의 내용·범위, 제 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휴업·폐업하 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 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 다.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신 설>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 함한다)가 미성년자 또는 피 성년후견인 경우
- 2.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3.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① 야생 동물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

<u><신</u>설>

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한다)은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 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 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

<신 설>

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2조의6를 준용한다. 다만, 상 속인이 제22조의6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 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 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 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환경부렁으로 정하 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 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

     대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
  - 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보관
  -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 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 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 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 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신 설>

-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 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생 산 또는 판매한 경우
  - 3. 최근 2년 간 3회 이상 영업정

     지 처분을 받은 경우
  - 4.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 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한 경우
- 3.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수
- 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 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모획·수입·반입·수출· 반출·양도·양수·인공증식 ・보관·폐사·방사한 경우
-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경우
- 8.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

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

- 9.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야생동물 영업 수 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 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 출금액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신 설>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 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 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
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지 여부
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
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허가 기준
-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 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립야 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도지사는 제6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모근 채 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서류, 야생동물 보관·생산·판 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시 기・방법・절차, 결과 제출, 제2 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5. 삭 제 6. ~ 9. (생략) ② ~ ④ (생 략)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 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 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 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 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 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 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 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 설>

ス	ŀ

<u>사</u>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포상금)
<b>.</b>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수
입·반입한 자
<u> </u>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의4. 제22조의8를 위반하여 준

8. ~ 15. (생략)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 8. (생략)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 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 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 1항, 제22조, <u>제23조의2제1항</u>,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u>한 자</u>
8. ~ 15. (현행과 같음)
제58조(재정 지원)
<b>.</b>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
동물의 보호 및 관리
5. ~ 8. (현행과 같음)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u>제22</u> 조의3, 제 <u>22</u> 조
<u>의9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1</u>
<u>항</u>
<u>.</u>
제64조(청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승인・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한다.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7. (생략)

② (생 략)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	الد
Ι.	끅	제

<u>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제</u>
<u>2항, 제23조의2제1항</u>
제68조(벌칙) ①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한 자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u>.</u>

2. ~ 8. (생 략) <신 설>

<신 설>

8의2. (생략) 9. ~ 16. (생략) 제71조(몰수) (생략)

<신 설>

제73조(과태료) ① (생 략) <u><신 설></u>

- 2. ~ 8. (현행과 같음)
- 8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수 입・반입이 불가능한 지정관 리 야생동물을 수입・반입한 자
-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반입이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보관한

8의4. (현행 제8호의2와 같음) 9. ~ 16. (현행과 같음)

- 제71조(몰수)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수입·생산·판 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 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 또는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가 소유한 야생 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 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

     을 운송한 자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 24. (생략)

④ (생략)

- 2. 제22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판매한 자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u>4</u> -----

-----.

- 1. ~ 7. (현행과 같음)
- 7의2. 제22조의2제1항 · 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22조의4제1항 · 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의4.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자
- 7의5.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신고하지 아니한 자
- 7의6.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 24. (현행과 같음)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